

## <mark>옥산통신</mark> 제2023-161호

## 삶의 기본을 재미있게 배우는 옥산교육

## <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>

안녕하십니까?

성장하는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본교 교육에 애써 주시는 보호 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초중등교육법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,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된 이후 각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전면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법,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규정개정 심의위원회, 학교 운영위원회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.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개 정 안-

- 1. 교육부 고시 제2023-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(학생 분리지도, 소지품 관리 등) 신설
- 2.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 근거 구체화
- 3.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정
- 4. 주요 내용(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부 고시 해설서 참고)
- 가. 옥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
  - 교사는 학생의 학업 및 진로, 보건 및 안전, 인성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음
  - 생활지도의 종류: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, 훈계, 보상 등 (체벌은 금지됨.)
  - 생활지도의 방법 '훈육' 중 수업 중 방해 행동에 대한 분리 방법
  - 학교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은 분리할 수 있음
  - 주요 분리 물품: 수업 중 사용하는 휴대전화, 녹음기(통신비밀보호법, 교원지위 특별법 등에 따라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은 금지됨.

2023년 12월

옥 산 초 등 학 교 장